?법무부공고제2013-12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624호, 2013. 1. 23. 공포?시행)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청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전화번호: 02) 503-7047 / 팩스: 02) 3480-3089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